

< 수정안 >

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의장은 갈등 사안에 따라 당사자 및 구청장이 위촉하는 협의체 위원 중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.

안 제15조 제목 “(비상임 갈등 조정관 등의 운영)”을 “(비상임 공공갈등 조정관 등의 운영)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의 “비상임 갈등 조정관”을 “비상임 공공갈등 조정관”으로 한다.

안 제16조 중 “비상임 갈등 조정관”을 “비상임 공공갈등 조정관”으로 한다.

안 제19조 중 “비상임 갈등 조정관”을 “비상임 공공갈등 조정관”으로 한다.